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. 3. 23 선고 2022가단13721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2. 9.

판 결 선 고 2023. 3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8,103,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10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19. 4. 10. 소외 주식회사 D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과 사이에 카니발하이리무진((차량번호 1 생략), 차량가격 57,640,000원, 이하 '이 사건 차량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월 납입금 1,079,300원, 약정기간 60개월, 연체이자율 연 24%로 정하여 차량리스계약(이하 '이 사건 리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는데,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위 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, 원고는 소외 회사가 납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,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38,103,982원(= 미회수원금 38,054,298원 + 지연배상금 49,683원)인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38,103,982원 및 그 중 원금 38,054,29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다음날인 2022. 10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 24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숙미